

#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93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거창창포원이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리 운영하고 지역 여건이나 국내 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시설별 운영 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창포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제명 변경

- 1) (현행)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
- 2) (변경)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

나.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 적용 규정 및 용어 등 정비(안 제1조·제2조·제5조·제6조)

다. 정기휴원일 명확화, 임시휴원일 규칙으로 위임(안 제8조)

라. 시설별 운영 시간을 규칙으로 위임(안 제9조)

마. 자전거 이용료 및 감면 근거 신설(안 제20조·별표 1·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·제18조의5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1. 7. 28.~8. 17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** 중 “거창창포원”을 “거창창포원 지방정원”으로 “자연체험, 자연학습”을 “정원문화 체험”으로 한다.

**제4조** 중 “설치”를 “관리”로 한다.

**제5조·제6조, 제8조·제9조**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5조(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)**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남상면 창포원길 21-1에 둔다.

**제6조(기능)**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.

**제8조(휴원일)** ①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.

1. 매주 월요일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.

제9조(개방 및 운영 시간)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.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”을 “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 조 제목“(카페 입장료 등)”을 “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본문 및 제2항 중 “입장료”를 “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”로 한다.

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 란을 제1호로 하고 제2호 자전거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3의 제목 “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(제20조 관련)”을 “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기준(제20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, 이용객의 자연체험, 자연학습 및 관광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"시설"이란 거창창포원(이하 "창포원"이라 한다)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, 건축물, 편의시설, 부대시설과 그밖에 자연체험, 자연학습 및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.</p> <p><u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u>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u>제5조(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)</u> ① 군수는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. ② 창포원은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남상면 창포원길 21-1에 둔다.</p> <p><u>제6조(기능)</u>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 1.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.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</p>	<p><u>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"시설"이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(이하 "창포원"이라 한다)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, 건축물, 편의시설,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 문화 체험 및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.</p> <p><u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</u> 창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u>제5조(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)</u>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남상면 창포원길 21-1에 둔다.</p> <p><u>제6조(기능)</u>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.</p>

3.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4.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

5.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

6.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개원 및 휴원)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·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: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

2.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: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

제9조(운영·관람시간)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.

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시설의 이용 신청 등) ① 시설

제8조(휴원) ① 창포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.

1. 매주 월요일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.

제9조(개방 및 운영 시간)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.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시설의 이용 신청 등) ① 회의

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(변경이용)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~③ (생략)

제20조(카페 입장료 등)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포원 시설 이용(변경이용)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) ①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②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2]

## 2. 자전거 이용료(제20조 관련)

구분	기준	이용료	추가요금
4인승, 6인승	1시간	4,000원	초과 30분당 500원
2인승		2,000원	
1인승, 어린이용		1,000원	